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단2439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2. 14.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B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598분의 826.45 지분에 관하여 2020. 8.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1. 접수 제141861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8. D과 사이에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4.,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E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B는 원고와 사이에 위 D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이 2012. 7. 25.경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E은행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2. 11. 15.경 E은행에게 14,500,4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D, B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 14,410,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3892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4. D, B에게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3. 8. 6.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B는 2020. 8. 3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598분의 826.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20. 9. 1.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 B에게는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한편 C은 2021. 11. 24.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22느단5073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는 2022. 4. 29.자로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 부족을 심화시킨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상속재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한정승인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혜원

별지